

관계기관 의견조회

동 물 진 단 용 방 사 선 발 생 장 치 의
안 전 관 리 에 관 한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반려산업동물의료과)

1. 개정이유

같은 유해인자(방사선)에 대한 같은 목적의 건강진단임에도 소관 법에 따라 검사 항목이 상이하여 재검사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, 법령 간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고 통합 건강진단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시 받아야 하는 혈액검사 항목 통일 (안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개정)

-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건강진단 시 받아야 하는 혈액검사 항목에 혈소판 수 추가(타 법령*과 통일)

*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,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등

나.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유사 법령 간 상호 인정 (안 제13조제3항 신설)

-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검사 항목을 유사 법령 간 통일함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

다.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통합 표준서식 마련 (안 별지제18호서식 개정)

-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건강진단표 서식을 법령 간 통일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적혈구”를 “적혈구 수, 백혈구”로, “백혈구”를 “혈소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의 성격에 따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안전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
2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써,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
3. 「의료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써, 「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

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) ① (생 략)	제13조(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 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검사 항목	2. -----
가.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, 적혈구 수 및 <u>백혈구 수</u>	가. ----- -----, <u>백혈구 수 및 혈 소판 수</u>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의 성격에 따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 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	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 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
	2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1조제1 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

	<u>진단으로써,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</u> 3. 「의료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으로써, 「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
--	--

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

**[]방사선작업종사자 []수시출입자
[]방사선관계종사자**

건강진단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진단대상	성명	생년월일	직종(면허종별)
	소속 기관 및 부서명		근무시작일
검사일자			
문진사항	과거 질병력		
	가족력		
	방사선 피폭증상 유무 : []없음 []있음 (※ 증상이 있는 경우 상세내용을 하단에 기재)		
	방사선 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·내용·기간·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애 유무		
	그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		
임상진찰	(※ 눈/피부/신경계/조혈계 등의 증상 기재)		
혈액검사	혈색소 양(Hb)	g/dl	적혈구 수(RBC) $10^6/\mu\ell$
	백혈구 수(WBC)	$10^3/\mu\ell$	혈소판 수(PLT) $10^3/\mu\ell$
기타검사	그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(말초혈액도말검사, 세극등현미경검사 등)		
종합소견			

[]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1조제1항제2호 및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21조 또는

[] 「의료법」 제37조제2항 및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 또는

[] 「수의사법」 제17조의3제3항 및 「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에 따라 위

와 같이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담당 의사명:

면허번호:

연락처:

의료기관명

직인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<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653